

제6장 경제 협력

제6.1조 목적

1. 진행 중인 경제 및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, 상호 이익 및 관심 분야에서 그들의 기존 경제 동반자 관계를 보완하는 데 합의한다.
2. 양 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개발 격차를 좁히고 이 협정의 이행 및 활용으로부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.
3. 양 당사국은 경제 협력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, 특히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의 이행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우선 순위 분야와 합치하는 특정 필요와 요구사항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.
4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,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할 필요성을 인정한다.

제6.2조 협력 분야

1. 이 장에 따른 경제 협력은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을 통하여 이 협정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을 지원한다.
2. 양 당사국은 다음에 중점을 둔,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한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.
 - 가. 무역 및 투자 증진

나. 농업, 임업 및 수산업

다. 전자상거래

라. 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

마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바. 무역 및 투자 관련 법적 틀

사. 사회기반시설 개발

아. 산업 발전

자. 정보통신기술, 그리고

차. 양 당사국 간 합의된 그 밖의 사안

3. **무역 증진:** 양 당사국은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구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. 그러한 협력에는 무역 및 투자 조사단, 정기 비즈니스 세미나 및 포럼과 같은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의 조직이 포함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4. **농업, 임업 및 수산업:** 양 당사국은 농업, 임업 및 수산업과 양식, 농산업, 식량 안보, 생태관광 및 농장과 시설 투자에 대한 협업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기회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.

5. **전자상거래:** 양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확대하는 데 전자상거래가 근본적인 역할을 함을 인정하면서, 전자상거래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. 그러한 협력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, 전자상거래 발전 정책 및 규정의 향상, 그리고 전자상거래 발전 및 이용과 관련된 도전 과제를 다루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6. **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:** 양 당사국은 상품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술 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,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그것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. 그러한 협력에는 시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험소 및 인증 네트워크 개발과 상호 관심 분야의 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7. **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:** 양 당사국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, 무역에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 있어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.
8. **무역 및 투자 관련 법적 틀:** 양 당사국은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촉진하는 데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법적 틀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이 동원하고 조성하는 재정 및 기술 지원으로 상업적인 법적 틀을 개발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. 그러한 협력에는 계약법, 상법, 식품법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법과 같은 법적 제도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9. **사회기반시설 개발:** 양 당사국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개발, 건설 기술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설계를 포함한 분야에서,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발굴한다.
10. **산업 발전:** 양 당사국은 그들의 산업 구조의 다양화 및 고도화,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수요와 공급을 충족하는 산업자재 및 건축 설비 시장을 포함한 분야에서, 상호 번영을 위한 맞춤형 산업 협력을 증진한다.
11. **정보통신기술:** 양 당사국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영업 관행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급속하게 발전함을 인정하면서,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협력한다. 그러한 협력에는 정보통신기술 정책 개선,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창출, 전자 정부 서비스의 제공, 콘텐츠 개발, 네트워크 보안 및 사생활 보호, 네트워크 기반시설, 창의 산업 및 멀티미디어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개발이 포함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12. 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은 부속서 6-가에 명시된다.

제6.3조

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

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개발 및 역량의 격차와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이 협정의 이행과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이 합의한 대로,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활동을 개발한다.

제6.4조

경제협력위원회

1.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,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된다.

2.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가. 작업 프로그램과 그 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것

나. 설치할 다른 위원회와 협력하고 경제 협력 활동 및 관련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조정을 유지하는 것, 그리고

다. 작업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 이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양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

제6.5조

작업 프로그램

1. 이 장의 목적상, 작업 프로그램이란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하는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 목록을 말한다. 작업 프로그램은 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경제협력위원회에 의하여 감독된다.
2. 작업 프로그램은 경제 협력의 우선 순위 분야를 고려하여, 이 협정에서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제협력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다.
3.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, 작업 프로그램에서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, 아래의 협력 형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.
 - 가. 인적자원 개발 지원, 역량 강화, 기술 지원, 의견 및 정보 교환,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
 - 나.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
 - 다. 정보 접근성과 사업 기회 향상
 - 라. 공동 연구 및 개발 수행과 전문가 교류
 - 마. 상호 관심 분야의 개발을 위한 경험, 우수 관행 및 우수 방법의 공유
 - 바. 개발 정책 및 전략의 수립
 - 사. 기술 이전
 - 아. 법률 사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전문 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 세미나 수행, 그리고 무역 및 투자에 관련된 법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수립
 - 자.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의 협력 강화, 그리고
 - 차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형태

4. 작업 프로그램은 양 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수정된다.
5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접촉선으로 지정한다. 각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접촉선의 연락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접촉선의 모든 변경 또는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수정을 신속하게 통보한다.
6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대로, 상호 관심 분야의 우선 순위 투자 프로젝트를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위한 기회를 발굴한다.

제6.6조

자원

1.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장에 따른 경제 협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.
2. 양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, 이 협정에 따른 경제 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존의 재정적 경로 또는 그 밖의 자원을 활용한다.
3. 양 당사국은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,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및 파트너십 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음과의 협력 및 다음으로부터의 기여를,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고려할 수 있다.

가. 비당사국, 개발 파트너 또는

나. 소지역, 지역 또는 국제 기구나 기관

제6.7조

분쟁해결의 비적용

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